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 7. 14.

사건번호 2019년 형 제65208호

수신자 서울남부지방법원
발신자
검사 이광우 _____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1. 피고인 주식회사팜한농 (110111-4362482 대표이사:이)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5, 6층(여의도동, FKI
타워)

죄명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적용법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의2, 제30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마목,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없음

의견 별금 3,000,000(삼백만)원

가납명령 청구

2. 피고인 우

직업 회사원,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적용법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마목,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 호 인 없음

의 견 벌 금 2,000,000(이백만)원
가납명령청구

II. 공소사실

피고인 우 은 주식회사 팜한농의 노경팀 소속 직원으로서, 2016. 5.경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대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팜한농은 작물보호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우

가. 불이익조치

이종현은 주식회사 팜한농의 직원으로서, 2014. 6.경 산하 7개 공장에서 발생하-

산업재해 은폐사건을 공익신고하여,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적발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위 이종현은 2018. 1. 1.자로 구미공장 물류관리 담당자로 전보 조치되어,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내 경영정보시스템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중 레포트(예산실적) 조회권한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5.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회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위 이종현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였다.

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2018. 11. 5.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종현에게 회사 ERP에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취지의 보호조치결정을 내린 사실을 통지받고도, 그때부터 2019. 1. 9.까지 위 이종현에게 해당 조회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팜한농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우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불이익조치를 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